

2.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996호 1999. 8. 31.

개 정 이 유

기업분사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1) 수도권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전용지역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함(법 제6조제2항).
- (2)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율을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19조 및 제120조).

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8조의2).

다.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출자금의

의 소득공제율을 출자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6조).

라. 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별적인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중고설비투자의 범위에 가동이 중단된 유휴공장을 사업양수도나 구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제율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7조).

마.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27조의2).

바. 2 이상의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평가를 인정하고,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가 이연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까지 계속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법 제38조).

사.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인수기업의 양수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분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법 제38조의2·제119조 및 제120조).

아.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수도권법인본사의 수도권외지역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

(2)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62조)

(3) 수도권의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은 50퍼센트, 그후 2년간은 3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간은 100퍼센트, 그후 5년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

자. 비과세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연간 총급여액 2

- 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법 제88조).
- 차.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금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중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의2).
- 카.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취득기한을 국민주택규모에 한하여 1999년 6월 30일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 제99조)
- 타. 천연가스사용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함(법 제106조 및 제120조).
- 파. 종합유선방송용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제작용으로 사용되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112조의2).
- 하.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용인 등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주식을 양수한 사용인 등에게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법 제117조 및 제120조).
- 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의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126조의2).